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(관장) 제1항중 “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”을 “지방서기관
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 4 조 (관장) 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<u>5급상</u> <u>당 별정직지방공무원</u>으로 보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4 조 (관장) 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<u>지방서</u> <u>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</u> <u>지방공무원</u>으로 보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